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4년 12월 16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158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⑧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12일의 휴가를 각각 1회에 한정하여 얻을 수 있다.
1. 재직기간의 계산은 제15조제2항에 따른다.
 2. 장기재직휴가는 현재 재직 중인 부서의 장에게 결재를 득한 후 총괄 복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 최종 허가를 얻는다.
 3. 총괄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장기재직휴가 실시현황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조례는 시행 후 출산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는 시행 후 출산휴가 분할사용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특별휴가) ①(생략)</p> <p>② 임신 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p>제21조(특별휴가) ①(현행과 같음)</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 ⑦(생략)

<신설>

③ ~ ⑦(현행과 같음)

⑧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12일의 휴가를 각각 1회에 한정하여 얻을 수 있다.

1. 재직기간의 계산은 제15조제2항에 따른다.

2. 장기재직휴가는 현재 재직 중인 부서의 장에게 결재를 득한 후 총괄 복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 최종 허가를 얻는다.

3. 총괄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장기 재직휴가 실시현황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인



2014년 12월 16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159호

군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군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32조
의2 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
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
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의 적용
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4조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향만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당해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 공보나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를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18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용도의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3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4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3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

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5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6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기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7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4조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3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 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31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28조 제2항 제1호 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2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

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3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군산시조례 제958호, 2010.12.24]를 폐지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지방행정동우회군산시분회지원조례 제5조 중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② 군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2항 중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③ 군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4조2항 중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④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제18조 중 “군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⑤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제31조 중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⑥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중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⑦ 군산시 소비자기본 조례 제15조 2항의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⑧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22조 중 “군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⑨ 군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 제20조 중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⑩ 군산시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제9조2항 중 “군산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⑪ 군산시귀농귀촌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1항 중 “군산시보조금관리 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⑫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제12조 중 “군산시 보조금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⑬ 군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제5조 중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제10조 중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⑭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조례 제5조2항 중 “군산시 보조금관리조례 와 군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⑮ 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3항 중 “군산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⑯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20조 중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⑰ 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제10조2항 중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⑱ 군산시 경관 조례 제11조3항 중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⑲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1조4항 중 “군산시보조금관리 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⑳ 군산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제9조 중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㉑ 군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중 “군산시보조금관리 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㉒ 군산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 제24조 중 “군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㉓ 군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조례 제8조2항 중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제19조 중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㉔ 군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제6조2항 중 “군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㉕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7호 “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제6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종전의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인



2014년 12월 16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160호

군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

군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군산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고문변호사를 둔다.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산시장(이하 “시
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시 또는 시장에 대한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시 또는 시장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법적인 사항
4.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투자유치 통상 등의 대외관계 및 국제협
력 업무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령해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액사건, 소송난이도가 낮은 사건, 긴급한 경우 등에 대하여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촉 및 위촉의 제한) ① 시장은 3개 이내의 법무법인(법무공단을 포함한다)과 6명 이내의 개업 중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 또는 재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3. 위촉기간 종료시 고문변호사의 자문 및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경우

④ 시장은 새로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5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소송수행 및 자문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임여부를 정한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수행중인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소송당사자와의 담합행위 등으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지문을 한 경우

5. 제4조제4항에 따른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7. 자문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소송수행 결과 연간기준 패소율이 높은 경우

제7조(자문의 절차 등) ①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와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표를 작성하여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제출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현황 공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및 자문실적
2. 시의 소송사건 수임현황 및 소송 실적
3. 그밖에 시장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문수당 등)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 분기 말 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군산시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정한 임기를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시장이 고문변호사 중에 선임한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선임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제4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고문변호사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청 렬 서 약 서

□ 주 소 :

□ 성 명 : ○ ○ ○ (-)

□ 위촉기간 : 2013. 5. 1. ~ 2015. 4. 30.(2년간)

상기 본인은 「군산시고문변호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함을 동의하며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소송대리인 으로 선임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 준수 사항

- 1. 군산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회피
- 2.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 4. 기타 공공기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년 월 일

변호사 ○ ○ ○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위 축 장

주소 :

성명 :

귀하를 「군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제5조에 따라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군산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m²]

[별지 제3호 서식]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제7조제1항 관련)

1. 자문 건명 :

2. 평가표(고문번호사 ○○○)

만족도 평가(의뢰부서)

평가항목					점수
1. 자문의 정확성(20점) : 질의내용에 부합하는 자문이 이루어졌는가?					
 매우 그렇다(20) 그렇다(16) 보통이다(12) 그렇지 않다(8) 매우 그렇지 않다(4)					
2. 자문의 유용성(15점) :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					
 매우 그렇다(15) 그렇다(12) 보통이다(9)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지 않다(3)					
3. 자문의 친절도(15점) : 자문의 수행태도가 친절하였는가?					
 매우 그렇다(15) 그렇다(12) 보통이다(9)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지 않다(3)					
4. 자문의 적시성(15점) : 자문의 회신기일이 시기적절하였는가?					
 매우 그렇다(15) 그렇다(12) 보통이다(9)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지 않다(3)					
41. 자문의 긴급성(가점)					
구분	즉석, 3시간이상 자문	3시간이내 회신	당일 회신	2일이내 회신	
점수	5점	4점	3점	1점	
평가자 : 소속 직 성명					

난이도 평가(법무담당부서)

평가항목					점수
o 자문의 난이도(30점)					
 매우 높다(50) 높다(45) 보통이다(40) 낮다(35) 매우 낮다(30)					

3. 법률자문 관련 개선사항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인



2014년 12월 16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161호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사용료

구 분	예외입주자호당사용 (3인이상가족)	미혼여성 호당 사용
임대보증금	호당 49,600원	1인당 : 16,500원
월임대사용료	호당 25,300원	호당 25,300원

부칙

이 조례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인



2014년 12월 16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162호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12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중 “보관하고자”를 “봉안하고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장”을 “봉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외국인”을 “군산시거주 외국인”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분골 도자기 등 기타 물품”을 “봉안함”으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은 관내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군산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대해 공원묘지, 추모 관 사용료 및 관리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재해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료 50%, 단 임피면 공설장사시설 인근마을 주민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관리료 80%, 그밖의 임피면민에 대하여는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료 50%를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사용허가) ① 개인이 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 종중·문중, 재단 법인이 묘지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장사등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p> <p>③장사등에 관한법률 제17조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 사용기간은 15년으로하며 15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p>	<p><삭 제></p>
<p>제4조(허가한도) 묘지 사용 면적은 분묘 1묘당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규정한 면적을 초과하여 허가할 수 없다.</p>	<p><삭 제></p>
<p>제12조(묘지면적) 공원묘지의 사용면적은 분묘 1기당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16조에 규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p>	<p><삭 제></p>
<p>제14조(묘적부의 비치) 시장은 공원묘지 사용자와 사망자와의 관계를 기재한 묘적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p>	<p><삭 제></p>

제22조(금지행위) ① 승화원 내
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 1. 제사나 참배를 방해하거나
긴장을 주게 하는 행위
- 2. 화장을 방해하거나 기물을
파괴하는 행위
- 3. 법령이나 조례, 규칙등 시장
이 처분하는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위배되
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
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
고, 특히 승화원 사용신고를 취
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하는 자는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추모관의 사용) ① 추모관
에 유골을 보관하고자 하는 자
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수장하는 유골은 화장된 것이
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은
군산시민 및 외국인과 본적이
군산시인 사망자의 유골과 군산
시에 매장되었다가 화장한 유골
에 한한다.

제27조(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①

<삭 제>

제26조(추모관의 사용) ① -----
----- 봉안하고자 -----
-----.

②봉안-----
-----.

③-----
----- 군산시거주 외국인-----
-----.

제27조(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①

(생략)

②분골 도자기 등 기타 물품은 시장이 별도의 가격을 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제29조(금지행위) ① 추모관 내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봉안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 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긴장을 주게 하는 행위
- 3.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 4.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 5.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
- 6. 법령, 조례, 규칙등 시장이 처분하는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②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특히 추모관 사용신고를 취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봉안된 유골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40조(사용료 및 관리료 감면)

- ① (생략)
-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현행과 같음)

②봉안합-----

-----.

<삭제>

제40조(사용료 및 관리료 감면)

- ① (현행과 같음)
- ②시장은 관내거주자 중 국민기

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여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및 관리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관내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국가유공자
3. 시장이 재해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단, 군산시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임피면 공설장사시설 인근마을 주민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관리료를 80퍼센트 감면할 수 있고, 그 밖의 임피면민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관리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대해 공원묘지, 추모관 사용료 및 관리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재해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료 50%, 단 임피면 공설장사시설 인근마을 주민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관리료 80%, 그 밖의 임피면민에 대하여는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료 50%를 감면할 수 있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인



2014년 12월 16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163호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정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공익상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정하게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삭 제></p>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인



2014년 12월 16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164호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후단 중 “박물관업무담당과장”을 “박물관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관리 등) ① 박물관은 군산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박물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장은 <u>박물관업무담당과장</u>으로 하며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박물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p>	<p>제4조(관리 등) ① ----- ----- ----- <u>박물관업무담당계장</u>----- -----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4년 12월 16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165호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 및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사용을 취소, 연기, 변경하는 때는 사용일 5일전까지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90퍼센트를, 3일전까지는 50퍼센트를, 2일전까지는 30퍼센트를 반환하며 그 이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우 전액 반환한다.
4. 천재지변이나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
5. 이용 공연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 전용사용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생략)</p> <p>1. (생략)</p> <p>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광고·게사·공연·전람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p> <p>3. “전용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p> <p>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p> <p>5. ~ 12. (생략)</p> <p>13. “어른”이라 함은 20세이상의 자를 말한다.</p> <p>14. “경로대상”이라 함은 65세이상의 자를 말한다.</p> <p>15. (생략)</p> <p>16.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p> <p>제3조(사용허가)①운동경기나 연습 또는 그 이외의 행사를 위하여 군산시의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p> <p>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①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p> <p>1. ~ 6. (생략)</p> <p>7. 상업사용을 목적으로 2인 이상이 신청하여 사용이 경합될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의 절차에 따라 계약하여야 한다.</p> <p>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자</p> <p>2. 술에 만취된 자</p> <p>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p> <p>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p> <p>5.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p> <p>제10조(사용료 및 이용료)①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1” 내지 “별표 6”에 의하여 징수한다.</p> <p>② (생략)</p> <p>③ 경기장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기 허가된 시간에서 조정의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별표 1”에 의하여 산출한 초과분</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p> <p>----- 그 밖의 -----</p> <p>3. -----</p> <p>----- 사람을 -----</p> <p>-----</p> <p>4. -----</p> <p>----- 사람을 -----</p> <p>-----</p> <p>5. ~ 12. (현행과 같음)</p> <p>13. ----- 사람을 -----</p> <p>14. ----- 사람을 -----</p> <p>15. (현행과 같음)</p> <p>16. -----</p> <p>----- 따라 -----</p> <p>제3조(사용허가)①-----</p> <p>----- 사 -----</p> <p>----- 램은 -----</p> <p>-----</p> <p>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①-----</p> <p>----- 사람이 2명 -----</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2명 -----</p> <p>-----</p> <p>-----</p> <p>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p> <p>----- 사람은 -----</p> <p>-----</p> <p>1. ----- 사람 -----</p> <p>-----</p> <p>----- 사람 -----</p> <p>2. ----- 사람 -----</p> <p>3. -----</p> <p>----- 사람 -----</p> <p>4. ----- 사람 -----</p> <p>5. ----- 사람 -----</p> <p>제10조(사용료 및 이용료)①-----</p> <p>----- 따라 -----</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p> <p>-----</p>

현 행	개 정 (안)
<p>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주야 간 계속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 ----- -----</p>
<p>④ (생략)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①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관람권 판매수입액의 10퍼센트를 더 징수한다. 다만, 매표액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전용사용료를 징수한다.</p>	<p>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① ----- ----- ----- ----- ----- -----</p>
<p>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 ③ ----- ----- -----</p>
<p>④ 제1항에 의한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후 익일까지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p>	<p>④ ----- ----- -----</p>
<p>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할인) (생략)</p>	<p>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할인)(현행과 같음)</p>
<p>① (생략) 1. ~ 8. (생략) ② (생략)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증을 소지한 자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광주민주유공자증 또는 광주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써 장애등급증을 소지한 자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수임무부상자증특수임무부상자 유족증 또는 특수임무공로자증특수임무공로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p>	<p>①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사람과 ----- 1명 2. ----- ----- 사람 3. ----- ----- 사람 4. ----- ----- 사람 5. ----- ----- 사람 6. ----- ----- 사람</p>
<p>제13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p>	<p>제13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 및 이용료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환한다.</p>
<p>1. 전용사용·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 사용료의 50/100를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써 정지된 시일 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p>	<p>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사용을 취소, 연기, 변경하는 때는 사용일 5일전까지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90퍼센트를, 3일전까지는 50퍼센트를, 2일전까지는 30퍼센트를 반환하며 그 이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 경기 및 행사로써 정지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3. ----- 아니한 경우 전액 반환한다. 4. 천재지변이나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p>

현 행	개 정 (안)
<p>5. (생략)</p> <p>② (생략)</p> <p>제14조(입장권) ① (생략)</p> <p>1. 국가 및 시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자</p> <p>2 ~ 3. (생략)</p> <p>4.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이상의 자로서 경노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p> <p>②제1항에 의한 입장권의 요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따라 정한다.</p> <p>제1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p>	<p>5. 이용 공연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 전용사용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p> <p>② 삭제</p> <p>제14조(입장권) ① (현행과 같음)</p> <p>1. -----</p> <p>-- 사람</p> <p>2 ~ 3. (현행과 같음)</p> <p>4. -----</p> <p>사람으로서 ----- 사람</p> <p>② -----</p> <p>----- 따른 -----</p> <p>제1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 따른 -----</p> <p>----- 사람이 -----</p> <p>-----</p>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인



2014년 12월 16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166호

군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

군산시 경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경관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 내지 제28조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 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우리 시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 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등의 수립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준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군수·구청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관리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역사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안경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7.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8.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2.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장 경관사업 등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도시구조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1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지방의회 의원
-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들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⑧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⑨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경관협정 등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건축물의 외부공간 등과 관련된 시설 및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5.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라 경관협정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서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등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 ② 시장은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3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4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5장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의 경관심의 대상

제25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인 사업

3. 군산시 경관조례 [별표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로 군산시 경관조례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군산시 경관조례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4. 그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건축물

제6장 경관위원회

제27조(경관위원회 설치)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군산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8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제29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경관위원회에 자문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구비서류(경관 심의 도서 등)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영 제24조제3호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조례 제25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4. 조례 제26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5.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②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구비서류(경관 심의 도서 등)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26조제9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 서면심의(자문)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 심의(자문) 의결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4. 사업주체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후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경관심의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심의 및 자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산시 경관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성별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심의(자문)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의결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군산시 도시경관 위원회 운영 및 심의·자문(협의)규정'은 폐지한다.

[별표 1]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1. 건축물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규 모
민간건축물	경관지구의 건축물	2층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 300㎡이상
공공건축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	3층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 1,000㎡이상 (위 규모 미만은 경관담당부서 협의)

2. 공공시설물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규 모
공공공간	공원, 광장, 수변공간, 운동장,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공사비 10억원 이상 (위 금액 미만은 경관담당부서 협의)
도시구조물	육교, 지하도, 지하차도, 터널, 교량, 석축, 옹벽 등	
공공 시설	교통 시설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자전거보관대, 블라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방음벽, 교통신호기,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자전거보관대 등	공사비 5억원 이상 (위 금액 미만은 경관담당부서 협의) ※ 표준디자인 설치 시 심의 면제
	가로 시설 가로등, 보안등, 펜스, 가로수 보호덮개, 가로화분대 등	
	편의 시설 벤치, 파고라, 휴지통, 이동식 화장실 등	
	문화관광 시설 관광안내도, 안내표지판, 전망대, 공원등, 동상, 기념물·기념탑 등	
	공급 시설 맨홀, 분전반 및 배전반, 환기구, 신호등 제어함 등	
	정보 매체 이정표, 안내표지판, 방향유도표시, 전광판, 게시판, 현수막 게시대, 포스터 등 등	
그 밖의 시설	벽화, 조각, 공사장 가림막 등	

3. 사회기반시설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규 모
사회기반시설	어항시설	100억 이상
	도시공원	50억 이상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인



2014년 12월 16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167호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군산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체”란 3인 이상의 주민이 상호간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시행주체와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기구로서 해당 지역에서 발굴된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4조(주민과 행정기관 등의 책무) ①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재생은 주민과 행정기관, 시민단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단체 및 기업 등이 함께 시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의 성장과 재생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기성시가지와 신도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도시의 경쟁력과 도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주민과 사업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④ 주민협의체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역주민의 대표들이 협의하여 별도로 작성하는 ‘주민협의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군산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② 도시재생사업의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재생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둔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⑥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제안의 검토
2.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주도형 사업에 대한 준비 및 추진 지원
3. 주민협의체 지원
4.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5.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6. 소식지 발간 등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업무
7. 평가 및 점검 등에 필요한 지표 조사 및 자료 지원
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10조(도시재생 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총괄관리와 컨설팅을 위하여 다양한 전문가를 사업총괄코디네이터 및 코디네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사업총괄코디네이터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식과 프로젝트 관리 경험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프로그램을 발굴 하

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전문가 활용 비용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업총괄코디네이터 역할) 사업총괄코디네이터는 사업 전체를 기획·총괄·조정하며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 ①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련한 제반사항에 관한 총괄·조정
- ② 국가정책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재생의 방향성을 제시
- ③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계획 및 설계용역 등의 발주방식 및 과업지시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
- ④ 계획안의 수정·변경과 설계, 시공단계의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결정
- ⑤ 행정기관, 주민협의체, 사업시행주체 등 이해관계자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이를 계획 및 사업추진에 반영

제12조(코디네이터의 역할) 코디네이터는 사업총괄코디네이터를 보좌하여 구역별 또는 개별 도시재생사업의 기획 및 추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조정,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주민공동체 사업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홍보 등을 담당한다.

제13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5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군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법 제27조에 따른 융자의 조건)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1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0조(특별회계의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21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군산시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인



2014년 12월 16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168호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법 제 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제23조제1항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연면적 1천제곱미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3호의 “건축물의 높이는 2층 이하일 것”를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일 것”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의 “산업단지 내 공장건축물의 건축”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으로서 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자가 지정된 건축물”로 한다.

제3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대한건축사협회 전북건축사회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와 관련하여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제1항제7호를 삭제 한다.

제33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제1항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제10호를 신설한다.

10.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제38조제1호중 “90”을 “60”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중 “90”을 “6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전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2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등)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 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u>연면적 5천제곱미터</u>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7조(가설건축물) ①(생략)</p> <p>1. ~ 2. (생략)</p>	<p>제20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p> <p>제2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등)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 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u>연면적 1천제곱미터</u>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p> <p>제27조(가설건축물)①(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3. 건축물의 높이는 2층 이하일 것
제2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1.(생략)

2. 산업단지내 공장건축물의 건축

제3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 ⑤ (생략)
<신설>

제32조(건축 지도원) ① (생략)

- 1. ~ 6. (생략)
- 7. 그 밖의 건축관련 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시장이 임명한 자

제33조(대지안의 조경) ① (생략)
<신설>

3.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일 것
제28조(건축물의 사용승인)1.(현행과 같음)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으로서 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자가 지정된 건축물

제3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대한건축사협회 전북건축사회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와 관련하여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건축 지도원)①(현행과 같음)

- 1. ~ 6. (현행과 같음)
- 7. (삭제)

제33조(대지안의 조경) ① (현행과 같음)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1. ~ 9. (생략)

제2항 10. <신설>

제38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 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 1. 주거지역 : 90제곱미터
- 2. ~ 4. (생략)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 : 90제곱미터 이상

다.

1. ~ 9. (현행과 같음)

제2항 10.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제38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 1. ----- 60 -----
- 2. ~ 4. (현행과 같음)
- 5. -----
 ----- 60 -----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4년 12월 16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169호

군산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

군산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인



2014년 12월 16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170호

군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것에 적용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 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실적보고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29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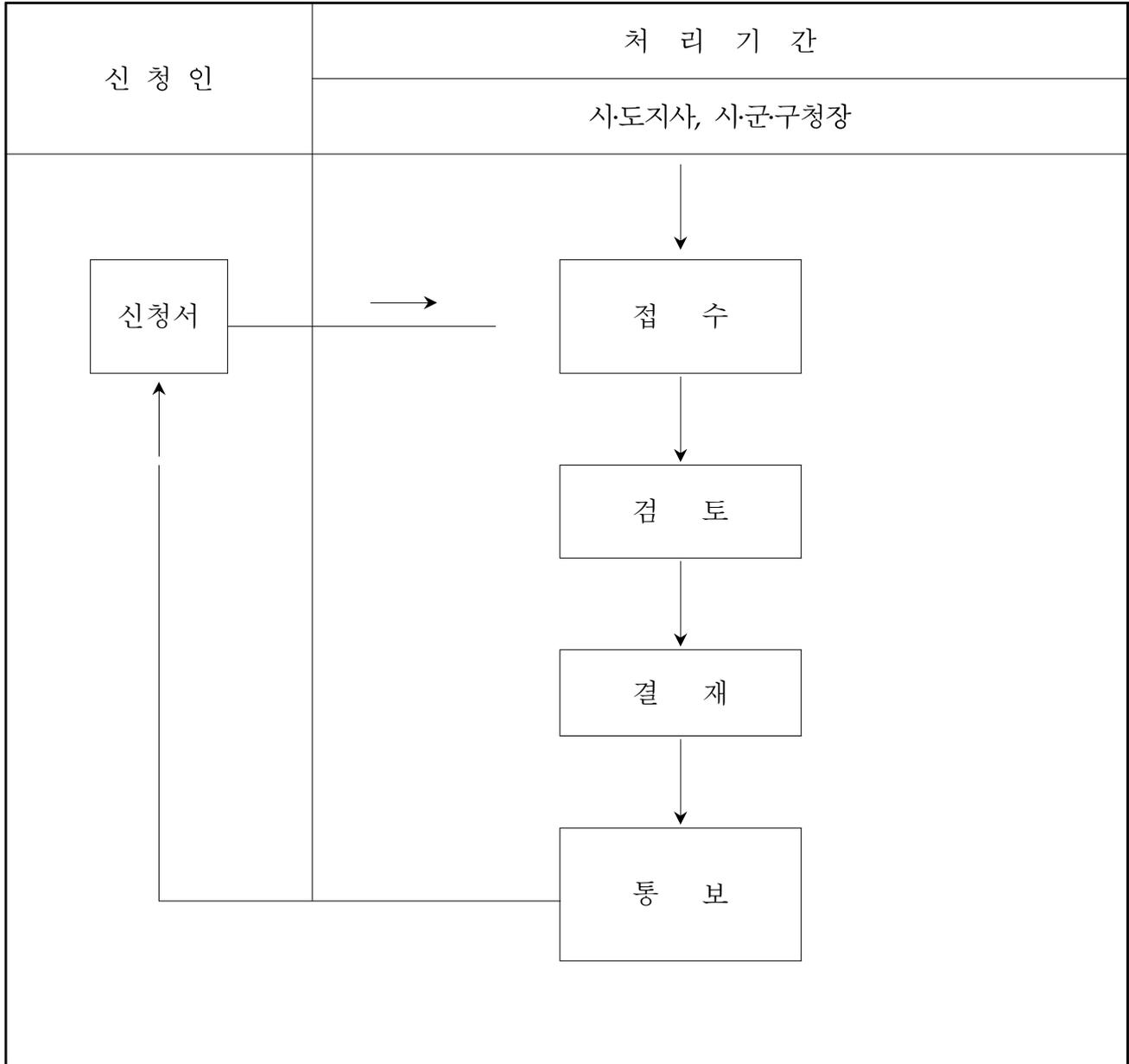
군산시장 귀하

첨부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2호 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	성명 (한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 서식]

제 20 - 호

**위 축 장
금 연 지 도 원**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축 기 간: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 서식]

(앞 쪽)

제 호

금연지도원증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군 산 시 장

60mm×90mm

(색상 : 연파랑)

(뒤 쪽)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위 사람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법에서 정하는 감시·계도 등의 업무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전화번호 : 000-000-0000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m² or 플라스틱

[별지 제7호 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	① 소속(단체명)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 및 「금연지도원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직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4년 12월 16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171호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 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를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주소지 관내에 한함)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

음의 경우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시에서 부담할 수 있다.

1. 읍·면지역 가정용 신설 급수공사비용(건축법시행령 별표1 1호 가목의 단독주택 단,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 복지시설은 제외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가정용(건축법시행령 별표1 1호 가목의 단독주택) 신설 급수공사비용
3. 국가로부터 인수공통전염병 위험지역으로 지정받은 지역 및 살처분 매몰 위험지역(반경 500m 이내) 안에서 신설 급수공사 비용
4.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비용“ 으로 한다.

제13조 제2항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 납부기간을 30일로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를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 납부기간을 30일로하며, 4회에 걸쳐 분할납부 할수 있으며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로 한다.

제13조 제4항 “④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를

“④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15일 이내로 하며,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삭제> 공동주택 ----- ----- (현행과 같음)</p>
<p>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p>	<p>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주소지 관내에 한함)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시에서 부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읍면지역 가정용 신설 급수공사비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1호 가목의 단독주택. 단,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은 제외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가정용(건축법시행령 별표1 1호 가목의 단독주택) 신설 급수공사비용

제13조 (공사비의 선납)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 납부기간을 30일로
 하며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
 으로 본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
 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
 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3. 국가로부터 인수공통전염병 위험
 지역으로 지정받은 지역 및 살처분
 매몰 위험지역(반경 500m 이내) 안
 에서 신설 급수공사 비용

4.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
 조공사 비용

제13조 (공사비의 선납)② -----
 -----30일로하며, 4회
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
 -----(현행과 같음)

④ ----- 환급금은 15일 이내
로 하며, -----
 --(현행과 같음)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4년 12월 16일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573호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대상 품목)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 과 같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군산시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구성한다.

- 1. 당연직 위원 : 향만경제국장, 시의회경제건설위원, 농정과장, 농수산물유통과장,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 2. 위촉직 위원 : 농산물품질관리원, 학계, 생산자단체,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유통전문가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②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 위촉직 위원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 2.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공동상표 업무 담당계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 심의시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없이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간사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이 없는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품질관리원) ①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둔다.

1. 품질관리원은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당해 업무 담당기간으로 한다.

②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9조(품질관리)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출하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나. 공동상표 사용지정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여부

- 다. 공동상표 사용의 적정성 여부
- 라. 생산품의 변질 및 품질 미달품의 혼입여부
- 마.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 바.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2. 출하품 검사

- 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유통 여부
-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
- 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동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 라. 기타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용신청)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7조에 의한 사용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준수 각서 : 별지 제3호서식
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 별지 제3-1호서식
3. 생산자별 조서(단체에 한함) : 별지 제3-2호서식
4. 조례 제6조 제1항 1호부터 3호까지의 농특산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생산자조직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②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수시신청으로 하며, 정기신청은 당해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수시신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실시한다.

제11조(심사기준) ①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농특산물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승인 절차) ① 품질관리원은 사용승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 예비 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 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승인 통지)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사용이 승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심의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승인 번호부여) 시장은 사용승인시 「별표 3」의 방법에 따라 사용승인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표시방법) ①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 공동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부착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동상표의 모양·색상, 사용규정은 새들군산 표준매뉴얼에 따라야 한다.

③ 포장재가 아닌 다른 전단, 간행물, 간판, 차량 등에 사용시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 ① 공동상표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해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할 때에 입회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 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품질검사 비용, 포장재·스티커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공동상표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7조(포장재관리) 공동상표의 사용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승인 취소 등 행정조치) ①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품질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공동상표 사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원은 분기 1회이상 사업장을 방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관리대장에 의한 기록·관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칙이 정한 것 이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대상 품목

상 품 류	품 목 수	세 부 품 목
제29류	33개 품목	냉동콩, 냉동된 완두콩, 보존처리한 과실(냉동한 과실은 제외), 보존처리한 멜론, 보존처리한 채소(냉동한 채소는 제외), 양념된 피클, 장아찌, 장아찌(울외를 이용한 것), 절임오이, 보존처리된 렌즈콩, 보존처리된 완두콩, 식용 들기름, 식용 참기름, 식용 콩기름, 식용유, 살겨유, 옥수수기름, 참기름, 소금에 절인 배추, 도라지환(丸), 도라지를 주성분으로 한 건강보조식품, 오가피를 주성분으로 한 건강보조식품, 잼, 냉동가지, 냉동된 채소(냉동채소), 냉동배추, 냉동버섯, 냉동양파, 냉동오이, 냉동당근, 냉동마늘, 냉동인삼, 건시(꽃감)
제30류	46개 품목	감자가루, 도정한 곡물, 보리가루. 식용 감자가루, 식용 걸겨를 없앤 귀리, 식용 고구마가루, 식용 곡분(식용 곡물가루), 식용 들깨가루, 식용 보리가루, 식용 쌀가루, 식용 옥수수가루, 식용 울무가루, 식용 콩가루, 식용 현미가루, 쌀(백미), 쌀가루, 옥수수가루, 으깬 귀리, 으깬 보리, 콩가루, 탈곡한 귀리, 탈곡한 찰흑미, 탈곡한 흰찰쌀보리, 탈곡한 찹쌀, 탈곡한 현미, 탈곡한 보리, 탈곡한 쌀, 가공한 곡물, 곡물가공식품, 굵게 간 옥수수, 메주, 약과, 엿, 전과, 한과, 떡, 간장, 고추장, 된장, 장(醬)류, 청국장, 식초, 차, 보리차, 도라지차, 울무차

상 품 류	품 목 수	세 부 품 목
제31류	58개 품목	강낭콩, 미가공 곡물, 미가공 귀리, 미가공 두류, 미가공 들깨, 미가공 메밀, 미가공 밀, 미가공 벼, 미가공 보리, 미가공 수수, 미가공 참깨, 벼, 생렌즈콩, 생옥수수, 생완두콩, 생잠두콩, 생콩, 생팥, 땅콩, 생밤, 생포도, 수박, 앵두, 은행, 자두, 잣, 참외, 포도, 호두, 배, 멜론, 단감, 호박, 단호박, 밤호박, 애호박, 샐러드용 치커리, 부추, 상추, 오이, 신선채소, 양파, 치커리뿌리, 시금치, 생버섯, 감자, 생감자, 가지, 고구마, 방울토마토, 생도라지,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토마토, 쥐눈이콩(신선한 것), 검은콩(신선한 것), 신선한 과실, 신선한 과실 및 채소
제32류	17개 품목	감주(음료), 과일주스, 과일주스를 함유한 무알콜음료, 냉동과일음료, 밀감수, 비알콜성 음료, 포도주스, 포도액, 채소 또는 과실 가공음료, 인삼주스(음료), 음료용 인삼엑기스, 음료용 인삼분말, 비알콜성 과일 엑기스, 비알콜성 과일주스음료, 채소주스음료, 토마토 주스, 토마토 주스음료
제33류	13개 품목	쌀로 빻은 술, 인삼주, 탁주, 막포도주, 매실주, 머루주, 배술, 버찌주, 사과주, 식탁용 포도주, 천연발포성 포도주, 포도주, 약용주(藥用酒)

[별표 2]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

항 목	배점	심 사 기 준	평점
1. 영농(생산,영업)경력	7	○ 영농(생산,영업)경력 5년이상	
	6	○ 영농(생산,영업)경력 3~5년미만	
	5	○ 영농(생산,영업)경력 3년미만	
2. 유명도 및 성가도	7	○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6	○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5	○ 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가제고가 기대됨	
3. 대외 신용도	8	○ 3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가 매우 높음	
	6	○ 1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5	○ 대외신용도가 보통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8	○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6	○ 판매처 일부 확보	
	5	○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5. 영농(생산,영업)장소 입지	8	○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7	○ 위와 같은 조건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	
	5	○ 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6. 상품별 세부품질기준 적합성	9	○ 상품별 세부품질기준에 매우 적합하여 품질이 우수함	
	7	○ 상품별 세부품질기준에 다소 미흡하나 품질수준이 양호함	
	5	○ 상품별 세부 품질기준에 미흡하며 품질이 보통임	
7. 생산품 유통상태	9	○ 규격화, 포장화를 통한 유통	
	7	○ 규격화, 포장화가 보통	
	5	○ 규격화, 포장화가 미흡	

항 목	배점	심 사 기 준	평점
8. 생산시설 및 자재 등	9	○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7	○ 위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5	○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9. 자체품질관리 수준	9	○ 선별, 보관, 포장, 출하 시스템을 갖추고 자체품질 관리사를 지정 공동선별 등 품질관리가 체계적임	
	7	○ 자체품질관리사는 없으나 일부 시설을 갖추고 수확 후 출하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관리	
	5	○ 시설, 자체품질관리사가 없고 선별 등 자체관리와 사후 관리가 미흡	
10. 객관적 품질관리 실시	9	○ 년3회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검사 등 품질관리 실시	
	7	○ 년1회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검사 등 품질관리 실시	
	5	○ 공인기관을 통한 검사는 없으나 리콜제 등 자체적 품질관리 실시	
11.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9	○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기자재를 충분히 확보	
	7	○ 위 사항 일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5	○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기자재가 미흡함	
12. 우수조직(사업자) 인센티브	8	○ 수출, 품질우수표창, 품평회 등 입상, 품질인증, KS 규격인증, ISO인증, HACCP인증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 제출시 건당 2점 부여	
합 계	100		점

□※ 평가방법 및 적합 판정기준

- 상기점수는 기준점으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별표 3]

공동상표 사용승인번호 부여방법

○ 번호체계

00-00-000(승인년도-상품류-일련번호)

- 승인년도는 공동상표 사용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년도를 표기
- 사용기간 연장승인은 기번호 부여
- 상품류

상품류	쌀	잡곡류	채소류	과일류	두류	서류	버섯류	가 공 농특산물	기타
번호	01	02	03	04	05	06	07	08	09

- 일련번호 : 승인 순서에 의하여 부여

○ 부여예시

- 2012년도에 쌀을 첫 번째로 사용권을 부여한 경우
 - 12-01-001
- 사용권을 부여받은 업체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당초인증 : 12-03-001
 - 기간연장 : 12-03-001

[별표 4]

행정 처 분 기 준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제재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행정 처 분 대 상 행 위	처분기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	시정명령	사용정지3월	승인취소
2. 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	“	“
3. 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를 표시한 경우	“	“	“
4.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	“	“
5.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	사용정지1월	“	“
6. 재배포장(생산시설)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	시정명령	”	”
7.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정지3월	사용정지6월	“
8. 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사용정지3월	“

행정 처분 대상 행위	처분기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9. 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정지3월	사용정지6월	승인취소
10. 농약 안전사용 기준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	“	“
11. 품질관리원과 조사공무원의 조사 등에 불응하는 경우	시정명령	사용정지3월	“
12. 출하품 검사를 불응하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	“	“
13. 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 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	사용정지3월	승인취소	
14.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	“	
15. 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	“	
16.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	“	
17.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사용정지6월	승인취소
18. 상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	승인취소	
19. 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승인취소		
20. 소비자 고발과 행정·사법기관 등의 위반사항 통보시	사용정지3월	승인취소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p>제 호</p> <p>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품질관리원증</p>	<p>증 명 사 진</p>
<p>소 속 :</p> <p>성 명 :</p> <p>주민등록번호 :</p> <p>위 사람은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군 산 시 장 (인)</p>	

49mm × 75mm(인쇄용지(특급)190g/m²)

(뒤 쪽)

<p>주 의 사 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증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위 사람은 군산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 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한 출하전 검사 및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며 지도·단속 할 수 있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별지 제3-1호 서식]

생산 출하 여건 개요서

생산자명(단체명)		대 표 자	(참여농가수 호)
품 목		출하계획량	
1. 일반여건	생산자(단체) 자질		
	운영경력	년 월 일부터 (경력 년)	
	대외신용,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생산계획 : 톤,	출하계획 : 톤
	상표사용출하량	톤,	매
	판매처 확보		
2. 생산여건	생산입지조건		
	생산기반규모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현황		
	보유기계장비		
3. 품질관리 여 건	선별방식	개별단위선별(), 조직공동선별()	
	자체품질관리		
	교육훈련실적		
	집하선별시설		
	선별기계장비		
	저온, 예냉시설		
	리콜제 방법		
4. 특기사항			

※ 기재사항

- 일 반 여 건 : 생산자(단체) 자질,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 산 여 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 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 기 사 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이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 첨부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상표 사용승인 예비심사서

1. 신청내용

신청인	단체명		참여농가수	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산계획	품목 (품종)	생산기간	출하기간	
	재배면적	m ²	생산계획량	
	포장(공장)소재지			

2. 심사결과

분야	항목	배점	평점
가. 일반여건	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30	
나. 생산여건	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	30	
다. 품질관리여건	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30	
라. 우수조직인센티브	① 우수조직인센티브	10	
계	10개항목	100점	점
주거래사항	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 승 인 번 호 :

○ 사 용 자 :

○ 주 소 :

○ 품목명 (품 중) :

○ 사 용 기 간 :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동상표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인)

군산시 공고 제2014-1880호

『군산시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군 산 시 장**군산시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개정 안 입법예고****1. 제안이유**

- 인접시군인 서천군과 선린과 상생 관계 실천을 위한 관람료 감면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서천군민 박물관 입장료 군산시민과 동일 요금 적용 (안 제7조)

3. 의견제출

군산시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월 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나. 의견 제출처 : 군산시청 문화예술과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군산시 해망로240, 우편번호573-030, 전화454-7872, 팩스443-8284)

다. 의견 제출방법 : 제한없음(전화, 팩스, 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문화예술과 군산근대역사박물관 (☎ 454-78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개정조례 안

군산시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람자와 국가시책에 의한 관람료 감면대상자 및 시장이 선린 우호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타 도의 인접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람자는 “별표 2”와 같이 할인하여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관람료) ①~②(생략) ③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람자와 국가시책에 의한 관람료 감면대상자는 “별표 2”와 같이 할인하여 징수한다.</p>	<p>제7조(관람료) ①~②(생략) ③_____국 가시책에 의한 관람료 감면대상자 및 시장이 선린 우호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타 도의 인접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람자는 “별표 2”와 같이 할인하여 징수한다.</p>

[별표 2]

관람료 감면(제7조 제3항과 관련)

(단위: 원)

【 통합권(박물관/조선은행/18은행/진포해양테마공원) 】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성 인	2,000	1,000	
청소년,군인	1,000	500	
어 린 이	500	400	

【 개별권(박물관) 】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성 인	1,000	500	
청소년,군인	500	300	
어 린 이	300	200	

【 개별권(진포해양테마공원) 】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성 인	500	300	
청소년,군인	300	200	
어 린 이	200	100	

【 국가시책에 의한 관람료 감면 】

- 국가시책에 따른 공공시설 입장시 각 사업별 별도 할인을 적용

【 선린우호상 필요에 의한 감면 】

- 시장이 선린우호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민수준의 감면 및 별도 할인을 적용

군산시 고시 제2014-138호

군산시 도시재생선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34(2014.5.7)로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958(2014.12.15)로 승인된 「군산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군산시 도시계획과(454-354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 12. 16

군 산 시 장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1. 비 전 : 창조적인 도시재생, 근대역사문화경관 조성과 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2. 목 표 : 창조적 상생을 통한 근대역사문화도시 구현
주민공동체, 기업이 함께하는 군산 도시재생
3. 계획범위 : 군산시 원도심 일원(A=466,000m²)
4. 계획기간 : 2014. 12. ~ 2017. 12.
5. 추진전략
 - ▶ 근대건축 보전·정비 연계 주거재생
 - ▶ 상가활성화 기반 조성
 - ▶ 지역기업 상생 클러스터 구축
 - ▶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6. 계획내용

- 마 중 물 사 업 : 근대건축물 보전·정비 지원사업 등 8건
- 부 처 협 업 사 업 : 마을미술 프로젝트 등 5건
- 지 자 체 자 체 사 업 : 블록단위 주차장 조성 등 5건
- 민 간 투 자 사 업 : 그린웨이 네트워크 조성사업 등 2건

7. 재원조달 및 집행계획(마중물사업에 한함)

사업유형	사업비(억원)				단계별 재원투입(억원)				
	계	국비	지방비	민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이후
본 사업	200	100	100	0	20	65	65.5	49.5	-
계	200	100	100	0	20	65	65.5	49.5	-

8. 도시재생 선도지역내 행위제한 지역 및 행위제한 사항 : 실음생략

9.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열람

- 열람기간 : 2014. 12. 16 ~ 2015. 1. 16
- 열람내용 : 군산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열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도시계획과(☎063-454-3541~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산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관련도서 : 실음생략